

대구지방법원 2021. 5. 21 선고 2020가단135836 판결 [사해행위취소]

전 문

원고대한민국

피고A

변론 종결2021. 4. 23.

판결 선고2021. 5. 21.

주 문

1. 피고와 소외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20. 2. 20. 체결된 매매계약을 40,984,360원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.
2. 피고는 원고에게 40,984,36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%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3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기초사실

가. 소외 B는 2020. 8. 14. 기준으로 아래와 같이 원고에 대한 각 조세채무를 체납하고 있다(이하 '이 사건 조세채권'이라 한다).

1	부가가치세	2018.01.01. ~ 06.30.	2018.06.30.	2018.07.25.	211,930	205,760	6,170	확정신고 무납부
2	부가가치세	2017.07.01. ~ 12.31.	2017.12.31.	2018.09.03.	6,945,250	5,345,780	1,599,470	매입세액 차감 경정고지
3	근로소득세 (갑)	2018.05.01. ~ 05.31.	2018.06.30.	2018.06.30.	96,070	93,280	2,790	원천세신고 무납부
4	근로소득세 (갑)	2018.06.01. ~ 06.30.	2018.07.31.	2018.07.31.	96,160	93,360	2,800	원천세신고 무납부
5	근로소득세 (갑)	2018.07.01. ~ 07.31.	2018.08.31.	2018.08.31.	96,070	93,280	2,790	원천세신고 무납부
6	부가가치세	2018.07.01 ~ 12.31.	2018.12.31.	2019.01.25.	14,997,420	13,213,620	1,783,800	확정신고 무납부
7	부가가치세	2019.01.01. ~ 06.30.	2019.03.31.	2019.04.01.	7,416,020	6,534,000	882,020	예정고지 무납부
8	부가가치세	2019.01.01. ~ 06.30.	2019.06.30.	2019.07.24.	5,038,390	4,590,800	447,590	확정신고 무납부
9	부가가치세	2019.07.01. ~ 12.31.	2019.12.31.	2020.01.28.	6,087,050	5,783,440	303,610	확정신고 무납부
합계	40,984,360							

나. B는 2020. 2. 20. 그 소유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(이하 '이 사건 부동산'이라고 한다)을 조카인 피고에게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(이하 '이 사건 매매계약'이라고 한다), 2020. 2. 27. 위 매매계약에 따라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.

다. B는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부동산 외에는 채권자들에 대한 책임재산이 될 수 있는 실질적인 재산이 없었다.

라. 피고는 2020. 2. 27.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20. 2. 24.자 신탁을 원인으로 하여 수탁자 C지구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.

[인정근거] 다툼 없는 사실,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(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. 이하 같다), 변론 전체의 취지

2. 사해행위취소청구에 관한 판단

가. 피보전채권

위 인정사실에 의하면, 이 사건 조세채권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이전에 모두 성립한 것이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에 관한 사해행위 취소소송의 피보전채권이 된다[조세채권이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으로 인정되는 경우, 그 채권액에 사해행위 이후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발생한 가산금도 포함된다(대법원 2007. 6. 29. 선고 2006다66753 판결 참조)].

나. 사해행위

B는 이 사건 조세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조카인 피고에게 매도하였으므로, 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를 비롯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, 채무자인 B로서는 그로 인하여 공동담보의 부족을 초래하여 자신의 일반채권자들을 해하게 된다는 점을 알았다 할 것이며,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익자인 피고 역시 이러한 사정을 알고 있었다고 추정된다.

다. 사해행위 취소와 원상회복

- 1) 따라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.
- 2) 원상회복의 방법에 관하여 보건대,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C지구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앞으로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, 이는 원물반환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상회복은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가액배상의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.

사해행위를 취소하고 가액배상을 하는 경우, 그 원상회복의 범위는 목적물의 공동담보가액과 채권자의 피보전채권액 중에서 작은 금액이 된다고 할 것인바, 갑 제6, 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, 이 사건 부동산의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개별공시지가는 155,550,000원(= 51m² × 3,050,000원)이었고, 이 사건 부동산에 2016. 11. 10. 채권최고액 43,450,000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으므로, 결국 이 사건 부동산 중 채권자들의 공동담보가 되는 부분은 112,100,000원으로 피보전채권인 이 사건 조세채권을 초과하므로, 위 두 금액 중 작은 금액인 이 사건 조세채권 40,984,360원이 사해행위취소 및 가액배상 범위의 한도가 된다.

라.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

- 1)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의 실제 가치는 78,195,000원 정도에 불과하였고,

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채무금액이 98,700,000원 상당으로, B가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으므로, 이 사건 매매계약으로 원고를 해할 목적이 없었고, 피고는 선의의 수익자라는 취지로 주장한다.

2) 살피건대,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은 앞서 본 개별공시지가 이상으로 봄이 상당하고, 이에 반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이 피고 주장과 같은 금액이라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. 그 외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채무금액이 98,700,000원이라거나 피고가 선의의 수익자임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.

마. 소결

따라서, 이 사건 매매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이 사건 조세채권 금액인 40,984,360원 한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하고, 피고는 원고에게 가액배상으로 위 40,984,36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된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%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.

3. 결론

그렇다면,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.

판사김대규

별지